용인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

제정 2021. 6.30 조례 제2141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 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 - 가. 용인시, 용인시의회 및 그 소속 행정기관
 - 나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
 - 다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른 용인도시공사
 - 2. "공중화장실 등"이란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 중화장실·개방화장실·이동화장실·간이화장실·유료화장실을 말한다.
 - 3. "민간화장실"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.
 - 4. "불법촬영"이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.
 - 5. "불법촬영기기"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용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주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4조(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) ① 시장은 주민이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

- 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- 1.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
- 2.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대여
- 3. 그 밖에 시장이 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
- ③ 시장은 용인시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기관·법인·단체·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.
- 제5조(특별 관리대상 지정)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 정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.
- 제6조(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수 있다. 다만,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- 1.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
 - 2.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 이용자
 - 3. 불법촬영의 피해자
- 제7조(신고체계의 마련) 시장은 주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.
- 제8조(실태조사) 시장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- 제9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- 제10조(교육 등) 시장은 주민과 공중화장실 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,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11조(불법촬영 점검사항의 표시 등) 시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 기가 없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 한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다.
- 제12조(홍보) 시장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·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